



편중된 위임사건의 적극적 해소를 위한

변호사 및 법무사 사건위임 상한제 시행(안)

2016. 2.



서울특별시

서울신용보증재단

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

회생지원부 법무팀

회생지원부	팀장 황동조	5252
(법무팀)	대리 문혜영	5254

변호사 및 법무사 사건위임 상한제 시행(안)

-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사항의 해결
- 공정한 사건위임을 통한 재단의 투명경영 확립 및 이미지 제고

I 추진배경

□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요청 지적

○ (서울시의회)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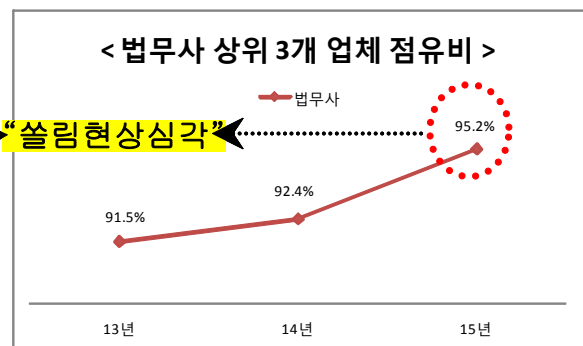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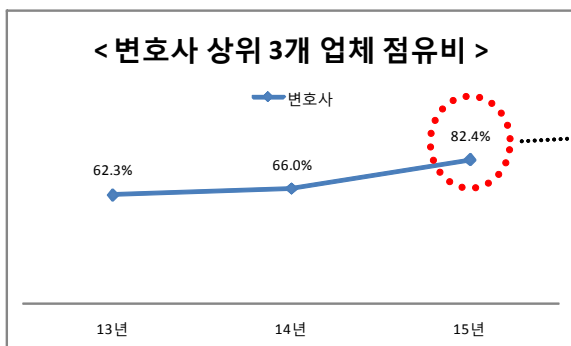
- ◇ “위임소송 업체들의 경우 일부에 집중되어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. 공정하게 위임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.”(○○○ 시의원)
- ◇ “소송과 관련하여 일정업체 쏠림현상이 있는데, 과도한 집중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실 것.”(△△△ 시의원)

□ 변호사 및 법무사 사건위임 편중현상 심화

- 최근 3년간 변호사 및 법무사 상위 3개 업체 사건위임 규모 추이
《연도별 추이》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분	총계약인원		총지급비용(A)		상위3개사 지급비용(B)		편중비율(B/A)	
	변호사	법무사	변호사	법무사	변호사	법무사	변호사	법무사
'13년	34	9	726	527	452	482	62.3%	91.5%
'14년	29	7	583	314	385	290	66.0%	92.4%
'15년	10	6	612	229	504	218	82.4%	95.2%
계	-	-	1,921	1,070	1,341	990	69.8%	92.5%



II 기본 추진 방향 (위임상한 적용대상)

□ 위임상한 적용대상 구분기준

위임사건전체 (총위임사건)

< 위임상한 적용대상 >

단순사건

변호사	· 구상금 청구소송 · 지급명령
법무사	· 가압류 · 소송 · 경매 · 압류추심/전부명령 · 재산명시 등 절차
비고	단순사건의 경우 변호사별 및 법무사별 특화구분의 실익이 별무

非단순사건(난이도 높은 사건)

변호사	· 구상금등(사해행위) · 기타소송
법무사	· 가처분 · 담보권(근저당권설정등) · 채권양수 · 공매 · 기타사건
비고	非단순사건의 경우 변호사별 및 법무사별 유무형의 실력차이로 인한 구분의 실익이 뚜렷함

□ 소송위임변호사

- (위임상한 대상사건) 구상금 청구소송, 지급명령
- (적용산식 및 세부내용) 소송위임변호사(1인) 최대 점유상한비율(15%)

$$\frac{\sum \text{당해변호사(구상금 청구소송 + 지급명령)사건 보수총액}}{\sum \text{전체변호사(구상금 청구소송 + 지급명령)사건 보수총액}} \leq 15\%$$

- 구상금 및 지급명령 전체 사건 보수총액의 15% 초과하는 소송위임변호사의 위임사건 제한(소송위임변호사(1인) 보수총액 50백만원 초과시 적용)
- (제외사건) 그 외 소송사건인 경우 상한제와 관계없이 위임가능

< 그 외 소송사건의 전산분류 >

지급명령전환소송(구상금), 구상금 + 사해행위, 구상금 + 어음금, 어음금, 어음금 + 사해행위, 사해행위, 보증채무금, 부당이득(보증채무금 관련), 부당이득(기타), 배당이의, 추심의 소, 제3자의 소, 가압류이의, 가처분이의, 명도소송, 손해배상, 가압류취소, 가처분취소, 기타

□ 법무사

- (위임상한 대상사건) 가압류, 소송, 경매·압류추심/전부명령, 재산명시등절차
- (적용산식 및 세부내용) 법무사(1인) 최대 점유상한비율(20%)

$$\frac{\sum \text{당해법무사(가압류, 소송, 경매, 압류추심/전부명령, 재산명시등절차)사건보수총액}}{\sum \text{전체법무사(가압류, 소송, 경매, 압류추심/전부명령, 재산명시등절차)사건보수총액}} \leq 20\%$$

- 가압류, 소송, 경매·압류추심/전부명령, 재산명시등절차 전체 사건 **보수총액의 20% 초과**하는 법무사의 위임사건 제한(법무사(1인) 보수 총액 30백만원 초과시 적용)
- (제외사건) 그 외 신청사건인 경우 상한제와 관계없이 위임가능

< 그 외 신청사건의 전산분류 >
가처분, 담보권, 채권양수, 공매 등 기타

Ⅲ 영업점 협조사항

- (단순사건) 변호사 및 법무사 관련 공정한 위임배분 노력
 - 특정인에게 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
 - 단순사건의 경우 수임자(변호사, 법무사)별로 실력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균형적 배분이 되도록 노력 요망
- (난이도 높은 사건) 선호하는 변호사 및 법무사 활용 가능
 - 활용이 용이한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임가능
 - 비단순사건(난이도 높은 사건)의 경우 수임자(변호사, 법무사)별로 실력차이가 다소 존재하므로 선호하는 곳으로 위임가능
- (수시점검) 재단 전산 내 위임사건 관련 조회방법
 - Wins21 > 관리 > 법적조치 > 법적조치현황 화면 內 “위임현황”
— (붙임) 자료 참조

IV 기대효과 및 시행(예정)일 등

□ 기대효과

- 위임사건의 공정한 배분으로 투명경영 강화
- 대내외적으로 클린(Clean) 재단 이미지 제고

현 재	변 경(案)	
단순사건과 난이도 높은 사건의 구분없이 사건위임 가능 (변호사 및 법무사 사건자율경쟁)	단순사건	위임상한제 적용
	난이도 높은사건	현재(기존)와 동일

- (개선) 단순사건과 난이도 높은 사건의 구분을 통하여 편중효과 완화되며 중요 처리사건의 선택과 집중 기대

□ 시행(예정)일 : 2016.02.15(월)

(※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성 있음)

□ 향후 추진계획 (예정)

< 향후 추진일정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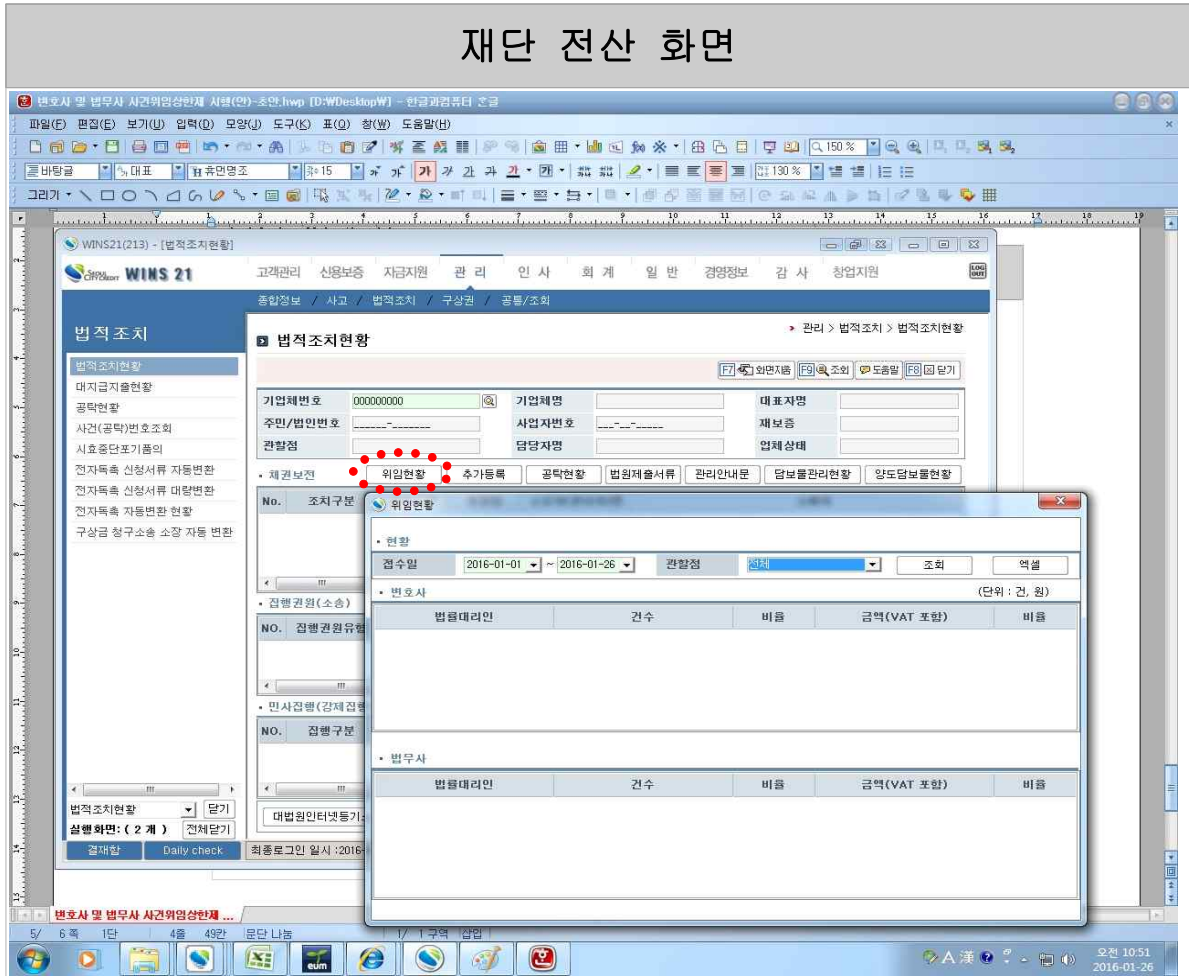
내 용	'16년												'17년					
	2	3	4	5	6	7	8	9	10	11	12	1	2	3	...			
사건위임 상한제 시행	'16.2월 ~																	
수시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	'16.2월 ~																	
의견수렴후 제도개선 및 보완(예정)	→						'16.7월 ~											

※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및 보완(예정) 끝.

붙임 : 화면조회

<붙임>

- 화면구성(예시)



✓ 실무상 어려운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